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신종갑 의원)

의안 번호	23-81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6. .

발 의 자 : 강동오, 고병준, 권영숙,  
남해석, 신종갑, 최은하,  
한선미, 홍지광

## 1. 제정이유

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중점관리사업 선정·관리(안 제4조)

라.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침(안 제5조)

마.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 ~ 제7조)

바.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·지원(안 제8조 ~ 제9조)

사.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등의 위탁(안 제10조)

### 3. 관계법령

- 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조 및 제16조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
- 3)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

### 4. 조 례 안 : 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붙임

### 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5. 19. ~ 5. 24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성인지 예산제”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·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“성인지 예산”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·배분의 과정을 말한다.
3. “성인지 결산”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.
4. “성인지 감수성”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·기술·지식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
은 양성평등의 목표, 대상사업의 선정, 예산의 수립·집행·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·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중점관리사업)**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·관리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
2.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
3. 교육, 체육, 문화, 편의시설,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
4.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
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지침)**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,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,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

침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8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,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.

**제6조(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)**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**제7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

1.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2.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
3.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, 대상,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
4.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
5.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

6.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
7.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
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교육과정 운영)**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, 수혜자 설정, 성과 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9조(주민참여 및 지원)**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, 결과분석,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·연구·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

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양성평등기본법

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9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

제16조(성인지 예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(性認知)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,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5. 6. 22., 2017.

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**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“성인지 예산서”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
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1. 3. 8.]

## 지방회계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18조(성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“성인지 결산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제8조 (교육과정 운영)
- 나. 제10조 (사무의 위탁)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조선영
연 락 처	02-3153-8514